



대한테니스협회 인사회계공보부 직원 채용 공고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는 대한민국 테니스 종목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유능한 인재를 공개채용합니다. 열정 가득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1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분야	주요업무
정규직 사원	사무행정/인사회계공보부 사원	○ 회계프로그램 실무 ○ 국고보조금(e나라도움) 지방보조금(보탬e) 업무 ○ 자금 출납 및 보고 ○ 예산 작성 및 연말 사업결산 ○ 기타 회계 관련 업무 ○ 그 외 업무분장에 따른 사무 행정업무

2 근무형태 및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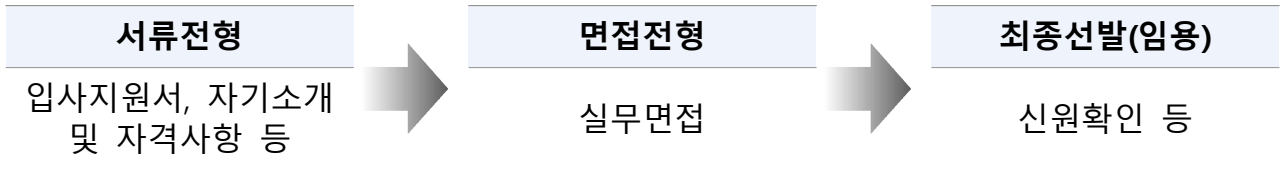
채용분야	근무신분	근무시간	근무지	근로계약기간	월 보수(세전)
사무행정/ 인사회계공보 사원	정규직 사원	상시근무자, 주 5일(월~금), 1일 8시간 (09:00~18:00)	올림픽공원내 테니스경기장 2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24)	채용일로부터~ *시보(수습)임용 기간 3개월	월 2,700,000원 (중식대 포함)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구분	주요내용															
자격요건	○ 대한테니스협회 인사규정 제18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단, 인사규정 상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만60세) 이상자는 제외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채용일 전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가능 ○ 협회가 지정한 임용일에 근무 가능한자 *별도 조정 가능 ○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면허증 사본 제출) ○ 주말근무 및 지방 출장이 가능한 자 ○ *회계관련 자격 소지 및 1년 이상 회계업무 근무경력자 -경력 인정은 4대보험 가입된 자로 경력(재직)증명서에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인정. -재정보증보험(신원보증보험) 의무가입 *회계관련 자격증은 아래 자격증만 인정 <table><tr><th>주관</th><th>종류</th><th>비고</th></tr><tr><td>한국공인회계사회</td><td>FTA(회계실무) 1-2급 TAT(세무실무) 1-2급</td><td>국가공인 민간자격</td></tr><tr><td>대한상공회의소</td><td>전산회계운행사 1-3급</td><td>국가기술자격</td></tr><tr><td>한국세무사회</td><td>전산회계 1-2급 전산세무 1-2급 세무회계 1-3급</td><td>국가공인 민간자격</td></tr><tr><td>삼일회계법인</td><td>회계관리 1-2급</td><td>국가공인 민간자격</td></tr></table>	주관	종류	비고	한국공인회계사회	FTA(회계실무) 1-2급 TAT(세무실무) 1-2급	국가공인 민간자격	대한상공회의소	전산회계운행사 1-3급	국가기술자격	한국세무사회	전산회계 1-2급 전산세무 1-2급 세무회계 1-3급	국가공인 민간자격	삼일회계법인	회계관리 1-2급	국가공인 민간자격
주관	종류	비고														
한국공인회계사회	FTA(회계실무) 1-2급 TAT(세무실무) 1-2급	국가공인 민간자격														
대한상공회의소	전산회계운행사 1-3급	국가기술자격														
한국세무사회	전산회계 1-2급 전산세무 1-2급 세무회계 1-3급	국가공인 민간자격														
삼일회계법인	회계관리 1-2급	국가공인 민간자격														
우대사항	○ 체육인출신 - (운동선수) 전문체육 테니스선수로 우리협회 선수등록을 필한 자 - (체육관련 전공자) 체육관련 학과 전공자로 체육, 스포츠, 체육종목 전공 포함되어야 인정 ○ 체육 관련 공공기관 회계업무 근무경험 (예시: 체육관련 공공기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체육 산업개발/태권도진흥재단,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시·도체육회, 대한테니스협회 회원 시도협회) -경력 인정은 4대보험 가입된 자로 경력(재직)증명서에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인정.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 취득자 (1급~3급) ※ 컴퓨터활용능력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만 인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1)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서류마감일(2025.4.21)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 관련, 채용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2) 가점 미부여(내부규정															

구분	주요내용
	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 적용). 다만, 동법 제31조 제3항 단서 관련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5 전형절차



가. 채용일정

구분	추진일정
서류전형 (원서접수)	2025.04.11.(금) ~ 2025.04.21.(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5.04.25.(금)] 서류심사 : 04.23 (수)
면접전형	2025.04.28. (월) ※ 신분증 지참 [합격자발표: 2025.04.30. (수)]
임용	2025.05.07. (수) (예정)

나. 전형별 주요내용(채용방법: 채용공고를 통한 공개경쟁)

구분	주요내용	합격배수
① 공통(유의사항)		

- 잡스포이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접수
- 입사지원서는 반드시 한 개의 분야만 선택하여 작성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내용으로만 작성

-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 확인서 또는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진단서가 발급 가능한 자를 말함.
- 2) **취업지원대상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정한 취업 지원 대상자를 말함.

구분	주요내용		합격배수		
② 전형별 평가방법					
서류전형	○ (선발인원) 채용예정의 5배수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 단, 지원자수가 채용인원의 5배수 미만이거나 자격요건 미충족 등으로 적격자가 채용인원의 5배수 미만일 경우 합격자를 5배수 미만으로 조정(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5배수		
	채용분야	채용예정 선발인원(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회계업무	1명 5명			
	○ (평가기준) 적격여부평가, 경력, 자격증, 자기소개서 등 평가				
	구 분	주요내용			
자격요건 확인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미충족시 탈락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시 탈락 * 문항별 공백포함 100자의 미만 작성 시, 탈락 * 동일 음절, 문장 등 5회 이상 반복된 경우, 탈락				
가점요소 평가	○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요소 평가 ○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요소만 인정 (증빙서류는 온라인접수시 시 제출)				
면접전형	• (일시/장소) 2025.04.28. (월) / 서울 송파구 대한테니스협회 *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지 • (평가기준) 직업윤리관, 체육상식, 적극성, 성실성, 경력 및 경험 • (평가방법) 면접위원별 5개 항목 평가 (항목당 20점 만점, 총점 100점 만점)		1배수		
	유형	평가 항목 배점 평가 기준			
	구술 면접	성실성		20	예의.품행 및 성실성
		적극성		20	지원 동기 및 입사포부
		직업윤리관		20	협회 직원으로서 윤리관, 직업정신 등
		체육상식		20	협회 사전 인지도 및 체육관련 지식
		경력 및 경험		20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총점 100					
최종합격	• (선발기준) 합격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다음 각 평가항목 고득점자순(성실성 → 적극성 → 직업윤리관 → 체육상식 → 경력 및 경험)으로 결정함. • (최종확정) 지원 자격 검증 후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확정		-		
	예비합격운영	• 차순위 1~2위를 예비 합격자로 하고, 최종합격자 중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순위대로 임용	2배수		

구분	주요내용	합격배수
	-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다. 전형단계별 가점대상 (가점 상한 최대 10점)

유형	가점대상	전형단계		우대사항	적용기준	관련근거
		서류	면접			
법정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	✓	✓	5점/10점	• 국가보훈처 발급점수에 따라 전형별 5점 또는 10점 부여 ³⁾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		5점	• 국가장애인등록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2항에 해당하는 자
정부권장정책	청년 (만15~34세)	✓		3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해당하는 청년(2025.3.19. 서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경력	체육인출신	✓		1점	• (운동선수) 전문체육 테니스선수로 우리협회 선수등록을 필한 자	
				1점	• (체육관련 전공자) 체육관련 학과 전공자로 체육, <u>스포츠</u> , 체육종목 전공이 들어가야 인정	
	업무 경험	✓		3점	• 체육유관단체 회계업무 경험 -경력 합산 산정 후 기간별 차등 적용	
					합산	

3)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가점 적용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관련, 각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동 가점 미부여 (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 적용) 다만, 동 법 제31조 제3항 단서 관련,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기타 가점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가점 상한(최대 10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가점 부여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제출방법	용도
① 공통(유의사항)			
· <u>잡스పో이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접수</u> · <u>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사항은 증빙서류 모두 제출</u> · <u>입사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u>			
② 제출서류 및 방법			
접수 [25.4.11(금) ~ 25.4.21(월)]	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1)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다. *각종 자격증 사본 각 1부. *회계자격증 필수 첨부 라.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마. (해당자) 병역필 혹은 병역면제 확인서류-결격사유 확인용 * 남성지원자에 한함 바.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동점자처리 확인용 사. (해당자) 장애인증명서(시·군·구청) 아.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양식 3) ※ 동의 후 서명 제출만 인정 * "가"항부터 "아"항까지 순서에 준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첨부 요망. ex) 파일명 : 지원자 성명_지원분야_제출서류 ※ 잡스పో이즈 지원 제목 - 회계 지원_0000 * 상기 제출자료 미비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잡스포이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접수 -스포츠 산업일자리센터 JOB SPOIS (kspo.or.kr)	입사지원
면접당일 [25.4.28(월)]	○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국가발행 신분증만 인정	○ 원본제시	입 사 지 원 확인용
합격자 발표 후	해당자 ○ 징계사실유무확인서(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에서 개별 발급) ○ 이력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원본제출	

제출시기	제출서류	제출방법	용도
	○ 사진(최근 1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 채용신체검사서 (필요에 따라) * 단, 신체검사 결과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성범죄 등 관련 범죄경력회보서		

- ※ 최종합격자(채용예정자) 대상 스포츠윤리센터 발급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를 통해 징계이력 확인 예정(관련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4항)
-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경력 관련 유의사항 >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본인의 지원 분야에 대한 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사 직인(또는 인감)이 포함된 업무경력확인서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확인서만 제출 시 불인정)
- 수기로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는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외 서류(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는 불인정
- 지원서에는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 재직 중인 경우, 근무기간은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기재

6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 입사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채용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력의 계산, 자격증, 교육사항 등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일정은 대한테니스협회 홈페이지(<http://www.kortennis.or.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최종선발자에 대하여 성범죄자 등 임용의 결격사유가 드러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문의 및 연락처: 02-420-4285

2025.04.11.(금)



임용 결격사유

대한테니스협회 인사규정 제18조(임용 결격사유)

제18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체육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2022.12.27, 2023.4.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